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-007호
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. 13.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공무원 직종구분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능직이 일반직군 내 우정직군으로 변경·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우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직군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의3 제3항)

우정직공무원의 직급이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정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

나. 우정직군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(안 제13조 제3항, 별표)

우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정함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」 개정안에 따르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직종 및 직급을 「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」에 맞추어 규정함

3. 의견제출

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) '정보마당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란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 주소 : (110-110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

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

(전화 02-2195-1118, 팩스 02-2195-1129, 이메일

karib32@koreapost.go.kr)